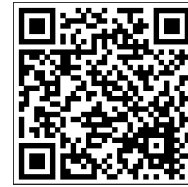


교과용도서, 수업목적, 수업지원목적 및 도서관 보상금 분배공고

(사)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『학교교육목적 등에서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』 및 『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·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』로 지정받은 저작권신탁단체로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보상금, 수업목적보상금,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및 도서관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

- 다 음 -

1. 지급 근거

- 저작권법 제25조 및 제31조

2. 지급기준 및 대상

※ 아래 지급기준의 고시는 “당해연도 분배금”에 대한 보상금 기준이며, “과년도 미분배금”은 해당 연도별 보상금 기준을 따름

■ 교과용도서보상금

- 지급기준 :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-2호(2023.01.12) 「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」에 의함
- 지급대상
 - 과년도 미분배금 : 2024년도 이전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
 - 당해연도 분배금 : 2025년도 1학기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

■ 수업목적보상금

- 지급기준 :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-3호(2023.01.12) 「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」에 의함
- 지급대상
 - 과년도 미분배금 : 2024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
 - 당해연도 분배금 : 2025년도에 징수된 수업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

■ 수업지원목적보상금

- 지급기준 :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-4호(2023.01.12) 「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」에 의함
- 지급대상
 - 과년도 미분배금 : 2024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
 - 당해연도 분배금 : 2025년도에 징수된 수업지원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

■ 도서관보상금

- 지급기준 :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-20호(2016.07.29) 「도서관의 저작물 복제·전송이용 보상금 기준」에 의함
- 지급대상
 - 과년도 미분배금 : 2024년도 이전 도서관에서 복제·전송 이용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
 - 당해연도 분배금 : 2025년도에 도서관에서 복제·전송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

3. 지급 절차

- 권리자 : 협회 홈페이지 [[보상금 저작물 검색 및 신청](#)]을 통해 분배 대상 저작물 확인 및 신청
- 협 회 :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

4.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

- 지급기한 : 보상금 분배 공고일로부터 10년. 다만, 분배공고 후 10년이 경과한 보상금 일지라도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권리가 확인된 때에는 소급하여 분배함.
- 미분배보상금 처리 : 분배 공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 및 동법 제31조 제6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

5. 담당자 연락처

담당업무	교과용도서보상금	수업목적보상금	수업지원목적보상금	도서관보상금
전자우편	wordle@kolaa.kr	(대학) sohyun@kolaa.kr (교육기관)abcchae@kolaa.kr	bjseo@kolaa.kr	abcchae@kolaa.kr
직통전화	070-4265-2524	(대학)070-4265-2525 (교육기관)070-4265-2529	070-4265-2457	070-4265-2529
분배대상 보상금 신청	협회 홈페이지(www.kolaa.kr) ▶ (메인페이지) 보상금 저작물 검색 및 신청			